의 안 번 호		제	ই
의 경	결	20 .	
연월 약	실	(제	회)

의 결사항

양 육 비 이 행 확 보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함)이 개정(공포 2024. 3. 26, 시행 2024. 9. 27.)됨에 따라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」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 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에 따라 독립법인의 정관으로 이행관리원 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5항)
 -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에서 독립 법인화됨에 따라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이 아닌 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- 나. 운전면허 정치처분 요청, 출국금지 요청, 명단 공개 대상자를 정함(안 제17조의2제1항, 제17조의3제1항, 제17조의4제1항)
 - 제재조치 대상자를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(안

제17조의2제1항제1호, 제17조의3제1항제1호, 제17조의4제1항제1호)

○ 제재조치 대상자를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3기(期)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(안 제17조의2제1항제2호, 제17조의4제1항제2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"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 정진흥원"을 "이행관리원"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-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
- 2.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3기(期)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

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"양육비 채무"를 "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"로 한다.

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-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
- 2.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3기(期)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	제6조(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
과 운영) ① ~ ④ (생 략)	과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 </u>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	⑤
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	
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	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4조의2	이행관리원
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	
<u>흥원</u> 의 정관으로 정한다.	
제17조의2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	제17조의2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
청) <u><신 설></u>	청) <u>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</u>
	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
	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	1.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
	<u>인 사람</u>
	2.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
	제1호에 따른 의무를 3기(期)
	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
<u>①</u>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시·도경찰청장은 <u>제1항</u> 의	<u>③</u> <u>제2항</u>
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	
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	
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	

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.

- 제17조의3(출국금지 요청 등)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"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양육비 채무</u>를 3기(期)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

②・③ (생략)

제17조의4(명단 공개) <u><신 설></u>

① · ② (생 략)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 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

제	 17조의3(출국금지 요청 등) ①
	1. (현행과 같음)
	2. <u>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</u>
	제1호에 따른 의무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17조의4(명단 공개) <u>① 법 제21</u>
	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
	말한다.
	 1.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
	인 사람
	2.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
	제1호에 따른 의무를 3기(期)
	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
	$\underline{2} \cdot \underline{3}$ (현행 제 1 항 및 제 2 항과
	같음)
	<u>4</u>

<u>제'</u>	<u> 2항</u> 각 호9	의	어느	하나	에	해
당	하는 사유기	ት	발생히	가거나	ુ	:육
비	채무자가	양	육비	채무	전	액
을	이행한 경	우	에는	그명	를 단	을
삭;	제해야 한다	7.				

<u>제3항</u>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

연 락 처

(02) 2100 - 6354